2016년도
민원우편 처리 기준표

2015. 12.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민 원 우 편

□ 민원우편의 개념

◦ 민원우편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를 등기취급하여 민원우편 봉투에 넣어 일반우편물에 우선하여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7호)

□ 제도의 특징

◦ 민원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우편요금 및 민원우편 특수취급수수료를 접수(발송)시에 선납

◦ 우정사업본부 발행 민원우편 취급용 봉투(발송용, 회송용) 사용
(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

◦ 민원발급 수수료 및 회송시의 민원발급 수수료 잔액을 현금으로 우편물에 봉입 발송 허용 (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64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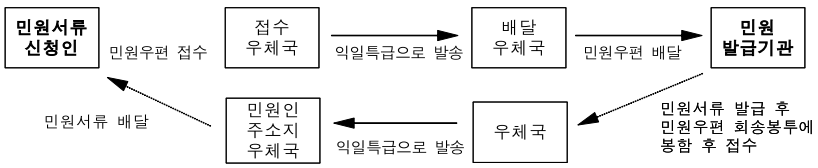
◦ 민원발급수수료의 송금액을 5,000원으로 제한
(민원발급 수수료가 건당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 민원우편의 송달은 익일특급에 의하여 신속히 송달 (규칙 제64조제3항)

◦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사무에 한하여 취급
(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 민원우편 취급방법(우편접수)

< 업무처리 절차 >



○ 민원우편 접수요령(발송)

① 기재사항 확인

· 민원우편봉투 표기사항 확인: 우체국에서 판매한 민원봉투에 발송인이 기재한 발급기관의 발급기관명, 소재지 주소 및 우편번호, 발송인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와 발급 수수료는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 민원우편신청서 기재내용 확인: 민원우편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취급대상 민원서류의 정당여부를 민원우편 처리 기준표(민원우편 취급대상 목록)을 참조하여 확인한다.

② 우편요금등의 확인 (요금체계)

· 발송시 취급요금 (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과 회송시 취급요금 (50g 규격우편요금 + 등기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을 합하여 선납 처리함.

* 우편요금은 회송용봉투를 포함한 중량의 요금이 부과됨

(예 시) 회송용봉투를 포함한 봉투의 중량이 25g인 경우 민원우편요금은?
▶ 4,480원

- 발송시 취급요금 (2,230원) = 300원(우편요금)+1,630원(등기수수료)+300원 (익일특급수수료)
- 회송시 취급요금 (2,250원) = 320원(50g 규격우편요금)+1,630원(등기수수료)+ 300원(익일특급수수료)

③ 봉함

· 발송인으로 하여금 접수담당자 입회하에 민원신청서 및 발급수수료와 요금선납 일부인이 날인된 회송용 봉투를 민원봉투에 함께 넣고 완전히 봉함토록 한다.

④ 접수 및 영수증 교부

· 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 절차에 따라 접수 처리하며, 부가서비스로 민원우편을 선택하여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입력한 후 등록한다.

· 영수증 교부 시에는 부가취급명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고 발송인에게 교부

⑤ 소인

· 등기우편물 취급요령과 같음

⑥ 접수번호 부여

· 민원우편 발송용 봉투의 등기번호란에 등기번호 바코드라벨을 부착한다.

○ 회송 민원우편 접수요령

① 접수대상

· 요금선납날짜도장이 날인된 회송용봉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64조제2항)

② 기재사항의 확인

· 회송용 봉투의 요금선납 일부인 날인,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 성명, 우편번호 및 수수료 잔액 등의 기재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회송민원우편물의 요금은 민원서류 발급 신청인이 접수 당시 납부한 것이므로 별도 회송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 회송 민원 우편물의 봉함상태 확인

· 회송 민원 우편물의 봉투 기재사항 및 봉함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④ 접수일부인 날인

· 회송용 봉투의 접수날짜도장란에 날짜도장은 날인 하지 않는다.

⑤ 접수번호 부여

·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의 왼쪽여백에 수수료 정산부분과 바코드라벨이 교차하지 않도록 첩부한다.

⑥ 회송민원 우편물의 영수증 교부

· 일반적인 작성방법은 등기취급우편물 접수요령과 같으며, 영수증 교부시에는 부가취급명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 인터넷우체국 민원우편 처리절차

○ 배달우체국의 인터넷민원우편 담당자는 "인터넷 민원우편" 접수내역과 입금내역을 당일 신청 건은 그 다음날 오전에 확인/대조한다.

※ 배달우체국별로 민원우편 제작할 업무가 있을 경우 알람창이 자동으로 뜸

※ 알람설정메뉴 : PostNet > 시스템공통 > 알람기능관리 > [e-그린우편]알람기능관리

○ 해당 민원우편 발급수수료(봉투대금 포함)를 인출하고,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봉투를 출력한다.

○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에 요금선납 일부인을 소인한 후 민원우편 봉투 속에 민원우편 발급 수수료 및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우편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봉투대금은 세입처리)

○ 송달방법은 익일특급 우편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 배달우체국에서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배원과의 수수를 철저히 하여, 배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참 고 우편업무편람(U편람)

제3편 부가우편서비스→ 제2장 특수취급 부가우편서비스 →제5절 기타 특수취급 → 2. 민원우편

차 례

■ 검 찰 청 .....

■ 경 찰 청 .....

■ 교 육 부 .....

■ 국가보훈처 .....

■ 국 세 청 .....

■ 농림축산식품부 .....

■ 대 법 원 .....

■ 법 무 부 .....

■ 병 무 청 .....

■ 보건복지부 .....

■ 산 림 청 .....

■ 산업통상자원부 .....

■ 외 교 부 .....

■ 중앙소방본부 .....

■ 해양경비안전본부 .....

■ 해양수산부 .....

■ 행정자치부 .....

■ 환 경 부 .....

검 찰 청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

□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 사건처분결과증명(기소· 불기소·참고인중지) ·····

□ 항고장접수증명 ·····

□ 재항고장접수증명 ·····

□ 항고기각증명 ·····

□ 재항고기각증명 ·····

□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

□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

□ 벌과금납부증명 ·····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

□ 형사재판 확정증명 ·····

□ 압수증명 ·····

□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증명 ·····

□ 기소(참고인)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 ·····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 ·····

□ 사실증명 ·····

□ 재정신청 접수증명 ·····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불기소이유고지청구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단, 고소·고발인 이외의 자인 경우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제도	1. 형사소송법 제259조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2항및[별지128]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사건처분결과증명(기소·불기소·참고인중지)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및[별지129]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항고장접수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검찰청법 제10조제1항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재항고장접수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항고기각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제2항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재항고기각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5매까지 500원(단, 추가1매당 5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검찰청법 제10조제1항,2항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재항고기각이유고지청구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5매까지 500원(단, 추가1매당 5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검찰청법 제10조제3항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벌과금납부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제도	1.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5매까지 1,000원(단, 추가1매당 5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형사소송법 제45조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제1항및[별지7], 제27조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형사재판 확정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압수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형사소송법 제12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기소(참고인)중지사건공소시효완성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사실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 재정신청 접수증명

소관부처	검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건 1부마다 5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각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 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정책기획과(02-3480-2438)

경 찰 청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서 ·····

□ 긴급자동차의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

□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 안전기준 초과승차(적재)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신청서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 ·····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

□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 수 료	5,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 · 후면) 4. 사업자동차증(사본1부) 5.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관련법 · 제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긴급자동차의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사업자동차증(사본1부) 5.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관련법 · 제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인터넷,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관련법 · 제도	1.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제4항(경찰청 훈령620호)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42)

□ 안전기준 초과승차(적재)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3,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3. 운전면허증(사본1부)
관련법 · 제도	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대리인 접수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2. 보험가입증명서(사본) 3. 학교(원) 등기(록)・인가・신고서(사본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관련법・제도	1.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대리인 접수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고필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소관부처	경찰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4. 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교통안전과(02-3150-0633)

교 육 부

- □ 입학증명서 ·····
- □ 합격증명서 ·····
- □ 재학증명서 ·····
- □ 휴학증명서 ·····
- □ 복학증명서 ·····
- □ 재적증명서 ·····
- □ 제적증명서 ·····
- □ 수료(예정) 증명서 ·····
- □ 졸업(예정) 증명서 ·····
- □ 성적 증명서 ·····
- □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
- □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 □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재교부 ·····
-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 신청 ·····
- □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
- □ 교원임용구비서류 확인원 ·····
-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 입학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1통당)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대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합격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재학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휴학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복학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재적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제적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수료(예정)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졸업(예정)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성적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교의 경우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대학별 민원담당부서 문의)

□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대학교 : ----원 ＊ 해당 대학교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 · 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공립대학교(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대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대학교 민원담당부서

※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각 대학 민원담당부서 문의)

□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대학교 : ----원 ＊ 해당 대학교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 · 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공립대학교(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대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대학교 민원담당부서

※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각 대학 민원담당부서 문의)

□ 교육비 납입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 국립 초·중·고·대학교 : 국문 300원(외국문 600원) • 공·사립 초·중·고 : ----원 ＊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 공·사립대학교 : ----원 ＊ 해당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 수수료 징수 조례 • 사립학교별 수수료 징수 규정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각급 학교 민원담당부서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대학의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각 대학 민원담당부서 문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재교부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 신청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3.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교원임용구비서류 확인원

소관부처	교육부
민원사무 명	교원임용구비서류 확인원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팩스
수수료	각 시·도교육청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름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2.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법·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연락처)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실(02-2100-6090) •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임(각 시·도교육청 민원실 문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소관부처	교육부
민원사무 명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FAX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구비서류	1.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련법 ·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담당부서 (연락처)	학생복지정책과(044-203-6524)

국 가 보 훈 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
□ 제대군인(자녀)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
□ 보훈장학생 신청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
□ 취업희망 신청 ·····
□ 대부기간 연장 신청 ·····
□ 지급보증 신청 ·····
□ 조세감면 증명 ·····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 ·····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 ·····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 ·····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
□ 교육지원 신청 ·····
□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사망) 상이 급여금 청구 ·····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 ·····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 ·····
□ 생업지원 신청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9)

□ 제대군인(자녀)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후 발급 (대상자 해당여부, 이중 수혜여부 등)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연락처)	제대군인취업과(044-202-5733)

□ 보훈장학생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 서면 1부.
관련법 · 제도	1. 보훈기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9)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국가유공자 등)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 취업희망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통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2.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3)

□ 대부기간 연장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상환기간변경 계약서 1부 3. 인감증명서(본인, 보증인) 각 1부. 4.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 3.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4. 특수임무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83)

□ 지급보증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6)

□ 조세감면 증명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2.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6)

□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사망확인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법 · 제도	1.「군인연금법」제31조 2.「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담당부서 (연락처)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입급지정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팩스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팩스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모사전송, 우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9)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민원사무 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2. 동법 시행령 제4조~제6조 3.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연락처)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팩스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만 해당합니다) 5.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자만 해당합니다)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7.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8.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4호의 경우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담당부서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 교육지원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부양의무자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필요시 입증서류 제출
관련법 · 제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9)

□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사망) 상이 급여금 청구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사망(상이)확인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법 · 제도	1.「전투경찰대설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2.「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3.「의무소방대설치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담당부서 (연락처)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팩스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팩스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 생업지원 신청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안정과(044-202-5657)

국 세 청

☐ 사업자등록증명(개인・법인) ·····

☐ 휴업사실증명(개인・법인) ·····

☐ 폐업사실증명(개인・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개인・법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개인) ·····

☐ 표준재무제표 증명 (개인・법인) ·····

☐ 소득금액증명(개인) ·····

☐ 납세사실증명(개인・법인) ·····

☐ 납세증명서(개인・법인)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개인・법인)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개인) ·····

☐ 모범납세자증명(개인・법인) ·····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개인) ·····

☐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개인) ·····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개인)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개인) ·····

※ **주의**

1. **민원인이 민원증명을 신청하셨지만 해당 증명 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 납세증명서: 체납이 있는 경우 발급되지 않음)
2. **국문증명만 발급** 됩니다. (영문증명은 서비스 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의 사본을 세무서에 발송**
관련법・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휴업사실증명 (개인·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폐업사실증명 (개인 · 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개인·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과세기간((예)'14.1월~'14.12월)**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과세기간((예)'14.1월~'14.12월)**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표준재무제표 증명 (개인 · 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사업연도((예) '12년 ~ '13년)**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32조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소득금액증명 (개인)

(종합소득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귀속연도 ((예)'12년~'13년)**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납세사실증명 (개인 · 법인) ※ 국세납부내역 증명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납세기간 ((예)'12년~'13년)**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납세증명서 (개인 · 법인) ※ 국세체납 없음에 대한 증명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사업자단위과제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개인 · 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이용대상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등이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모범납세자증명 (개인 · 법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②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의 신분증 (폐업, 사업 양도 등 중대한 사안은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 ④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 ⑤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법인 위임시)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이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에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개인이 이용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소득확인증명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이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려는 개인이 이용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이용대상	세금우대, 금리우대 금융상품 가입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받고자 하는 개인이 이용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개인)

소관부처	국세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이용대상	개인에 대해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음
신청서 기재사항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② 민원사무명, 발급매수,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④ 용도, 제출처 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본인의사 확인	**< 본인 신청의 경우 >** ①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③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신분증을 복사함) **※ 신청서와 본인의사 확인 서류를 세무서로 발송**
관련법 · 제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9조, 서식 제1호
담당부서(연락처)	관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제도계(044-204-2723)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

□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 수입동물 사전 신고 ·····

□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

□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

□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6,000원
구비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1부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축산법 제12조 제1항 2. 축산법시행령 제12조 3. 축산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담당부서 (연락처)	축산정책과(02-500-2050)

□ 동물병원 휴업(폐업)신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민원우편,우편,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동물병원(휴업,폐업) 신고서 2. 동물병원 개설신고필(허가)증
관련법 · 제도	1. 수의사법 제18조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담당부서 (연락처)	방역총괄과(02-500-2081)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우편,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동물병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담당부서 (연락처)	방역총괄과(02-500-2081)

□ 수입동물 사전 신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구비서류 참조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가축전염병예방법법 제35조1항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6조1항
담당부서 (연락처)	검역검사과(031-467-1914)

□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사무 명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구비서류 참조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1항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4조2항
담당부서 (연락처)	검역검사과(031-467-1914)

□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 명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서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허가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허가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4. 어업허가증 1부
관련법 · 제도	1.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제2항 2.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0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2-500-2360)

□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사무 명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2. 사진 2매(최소 6월 이내에 촬영한 3.0cm×4.0cm)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앞·뒤 사본
관련법·제도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4항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7항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4항[별지21호 서식]
담당부서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4)

대 법 원

□ 재산목록 사본 ·····

□ 재산조회결과 사본 ·····

□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 ·····

□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 ·····

□ 접수(계속) 증명 ·····

□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본·초본 ·····

□ 판결확정(송달) 증명 ·····

□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 ·····

□ 집행문 부여 신청 ·····

□ 가족관계등록신고 수리증명 ·····

□ 재산목록 사본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재산목록 사본
신청방법	민원우편
수수료	※ 1통당 500원(기본수수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함 ※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갈음함
구비서류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
관련법 · 제도	민사집행법 제67조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제2조1항
담당부서 (연락처)	사법지원실 (02-3480-1350)

□ 재산조회결과 사본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재산조회결과 사본
신청방법	민원우편
수수료	※ 1건당 500원(기본 수수료)⇨ 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신청할 때는 납부하지 아니함 ※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갈음함
구비서류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집행권원의 사본
관련법・제도	민사집행법 제67조, 제75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제2조1항
담당부서 (연락처)	사법지원실 (02-3480-1350)

□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
신청방법	민원우편
수수료	※ 1통당 500원(기본 수수료)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함 ※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갈음함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사소송법 제162조 2.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제2조1항
담당부서 (연락처)	사법지원실 (02-3480-1350)

□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2012.12.17.부터 공탁규칙 개정 시행)
본인확인	1. 본인 및 이해관계인 : 신분증 1부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는 청구할 수 없음) 2. 대리인의 경우 : 본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250호)
담당부서 (연락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02-3480-1880)

□ 접수(계속) 증명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접수(계속)증명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위 증명서의 교부 : 건당 5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신청서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사소송법 제162조 2.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1항 3.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7조 4.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대법원 규칙 제2141호)
담당부서 (연락처)	종합민원과(02-3480-1143)

□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본·초본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본 · 초본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재판서 ·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 - 1건마다 1,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신청서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사소송법 제162조 2.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1항 3. 형사소송법 제45조 4.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7조 5.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대법원 규칙 제2141호)
담당부서 (연락처)	종합민원과(02-3480-1143)

□ 판결확정(송달) 증명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판결확정(송달)증명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위 증명서의 교부 : 건당 5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신청서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사소송법 제162조 2.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1항 3.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7조 4. 재판기록 열람 · 등사 규칙(대법원 규칙 제2141호) 5. 각급 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담당부서 (연락처)	종합민원과(02-3480-1143)

□ 건설공사 기성 실적 증명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건설공사 기성 실적증명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 2부 (연락처 반드시 기재)
관련법 ·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연락처)	시설담당관실(02-3480-1429)

□ 집행문 부여 신청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집행문부여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건당 500원 (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수수료를 따로 납부해야함)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관계 소명자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판결 등 정본 포함) 1부
관련법 · 제도	1. 민사집행규칙 제19조 2. 각급 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담당부서 (연락처)	종합민원과(02-3480-1143)

□ 가족관계등록신고 수리증명

소관부처	대법원
민원사무 명	가족관계등록신고 수리증명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건당 200원
본인확인	1. 사건 본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포함)이 아닌 경우 위임장 원본(서명또는날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갈음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8조, 제48조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9호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부서 (연락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42)

※ 대법원 경력증명 및 재직증명 참고사항

소관부처	인사운영심의관실
민원사무 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방법	법원공무원(퇴직자 포함)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서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경력증명 또는 재직증명 신청서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관련법 · 제도	재직 등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내규
담당부서 (연락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02-3480-1286)

소관부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민원사무 명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신청방법	법관(퇴직자 포함)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증명서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경력증명 또는 재직증명 신청서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관련법 · 제도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담당부서 (연락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1797)

법 무 부

□ 외국인 체류민원 신청 및 신고 ·····

□ 외국인 체류민원 신청 및 신고

소관부처	법무부
신청방법	방문, 민원우편(도서지역 거주외국인만 해당), 인터넷
수수료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12만원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10만원. 다만 영주자격(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6만원. 다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본인확인	본인의 경우: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구비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수수료 2.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안내를 받아 구비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25조, 제30조, 제35조 내지 제3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담당부서(연락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7)

병 무 청

□ 병적증명서 발급 ·····

□ 병역증 및 전역증 재교부 신청 ·····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신청 ·····

□ 대체복무 확인 ·····

□ 병적증명서 발급

소관부처	병무청
민원사무 명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어디서나민원(읍면동)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병역증서 발급(재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1부 3. 위임장(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
관련법 · 제도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연락처)	고객지원과(042-481-2881)

□ 병역증 및 전역증 재교부 신청

소관부처	병무청
민원사무 명	병역증 및 전역증 재교부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병역증서 발급(재교부)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2.5㎝×3㎝) 1매 3. 신분증 1부(본인의 경우) 4. 위임장(가족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의 경우)
관련법 · 제도	1. 병역법 제7조 2. 병역법시행령 제5조 3. 병역법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고객지원과(042-481-2882)

□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신청

소관부처	병무청
민원사무 명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 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1부(본인의 경우) 3.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관련법 · 제도	징병검사규정 제43조(별지 제27호)
담당부서 (연락처)	징병검사과 (042-481-2918/2935)

□ 대체복무확인

소관부처	병무청
민원사무 명	대체복무확인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1부(본인의 경우) 3.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류(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관련법 · 제도	1.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3호]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0조제4항[별지4호)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77조 [별지13호] 4.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8조 [별지8호]
담당부서 (연락처)	1. 병무청 사회복무과(042-481-3045)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확인 2.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 2815, 2818) - 전문/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 확인

보 건 복 지 부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의 자격증서 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 ·····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신청 ·····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 신고 ·····

□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 연구기관 등록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연구기관 변경 신고(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연구기관 폐업 신고(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연구계획 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

□ 유전자검사기관 변경 신고 ·····

□ 유전자검사기관 휴업· 폐업 신고 ·····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 신청 ·····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변경 신고 ·····

□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 신고 ·····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

□ 유전자 치료기관 변경 신고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

□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

□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

□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 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수납 신고 ·····

□ 노인 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

□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 복지시설 변경 신고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의 자격증서 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의 자격증서 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발급수수료	수입증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 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관련법·제도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
담당부서 (연락처)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1)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

□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신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 협약서 4. 당해 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수정방법을 기재한 서류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의사면허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 · 폐업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 2. 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현황 3. 배아생성의료기관지정서 원본(폐업 시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연구기관 등록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가.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협약서 나.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법인인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연구기관 변경신고[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연구기관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연구기관 폐업신고[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잔여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 2. 잔여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 보관현황 3. 연구기관등록증 원본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8)

□ 연구계획 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연구계획 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계획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담당부서 (연락처)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51)

□ 연구계획서 변경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연구변경계획서 2. 변경사항에 대한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담당부서 (연락처)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51)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가.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나. 유전자검사 항목과 목적 2.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인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이 아닌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5)

□ 유전자검사기관 변경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5)

□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현황 및 처리계획서 2.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5)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허가 신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가. 시설·인력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나.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기관위원회협약서 다.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라. 인체유래물 제공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2.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합니다)인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이 아닌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6)

□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변경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6)

□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인체유래물은행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처리계획서 2. 인체유래물관리대장 3. 다른 인체유래물은행이나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했을 시에 이관에 관한 확인서 4.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원본(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6)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10,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의사면허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6)

□ 유전자 치료기관 변경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6)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인터넷 신청시 본인 확인 필요(공인인증서)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가. 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성별·전공분야가 포함된 명단 나. 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다.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현황 2. 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가. 기관위원회업무위탁협약서 사본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이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 개인정보필요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9)

□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배아/체세포복제배아/단성생식배아] (2013년 2월 2일 ~)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ㅇ 수립인 경우 1.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2.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별지 제28호 서식) 3. 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4.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별지 제29호 서식) ㅇ 수입인 경우 1.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 2.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별지 제28호 서식) 3.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물질양도협약서 등)
관련법 · 제도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질병관리본부/난치성질환과(043-719-8615)

□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

□ 노인 주거(의료 · 여가 · 재가) 복지시설 폐지 · 휴지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3521) 노인정책과(044-202-3457)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수납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수납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3519)

□ 노인 여가 · 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노인정책과(044-202-3457)

□ 노인주거(의료 · 여가 · 재가)복지시설 변경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3521) 노인정책과(044-202-3457)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 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민원사무 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발급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로 갈음)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

산 림 청

□ 입산허가 ·····
□ 불놓기 허가 ·····
□ 사상자 보상청구 ·····
□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
□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 ·····
□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 ·····
□ 채석단지지정 변경지정 신청 ·····
□ 채석(변경, 기간연장)신고 ·····
□ 토사채취신고 ·····
□ 산지전용 변경신고 ·····
□ 산지복구의무 면제 신청 ·····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규, 재) ·····
□ 용도변경 승인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
□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 토사채취변경신고 ·····
□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
□ 산지복구 전문기관 지정 신청 ·····

□ 입산허가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입산허가 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7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불방지과(042-481-4256)

□ 불놓기 허가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불놓기 허가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림보호법 제34조제3항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12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불방지과(042-481-4256)

□ 사상자 보상청구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상자 보상청구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및 [별지 48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불방지과(042-481-4259)

□ 토석채취(변경, 기간연장)허가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수수료	1.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구비서류	**토석채취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1부. 2.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토석채취 변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지 16호
담당부서(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토석매입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매입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석무상양여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무상양여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지 제31호
담당부서(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1부. <첨부서류> - 없음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및 별지 제35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수수료	1만m^2이하 : 20,000원, 1만m^2초과 : 2만원에 그초과면적 1만m^2 마다 2만원 가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지 20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채석(변경, 기간연장)신고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기간연장시고만 해당)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채석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신고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변경신고서 1부. <첨부서류>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항, 별지 제22호, 제23호, 제24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토사채취신고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사채취신고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2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296)

□ 산지전용(변경) 신고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산지전용신고 시만 가능)
수수료	ㅇ 산지전용 시고 - 1만㎡이하 : 5,000원, - 1만㎡초과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가산 ㅇ 산지전용 변경신고, 기간연장 신고 :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산지전용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

	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산지전용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축산업등록증(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별지 제7호
담당부서(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123)

□ 산지복구의무 면제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구의무면제신청서 1부 2.「지적법」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3.「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39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43)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규, 재)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규신청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재) 발급신청서 1부 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1부 다.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1부 라. 증명사진 1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재발급신청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재) 발급신청서 1부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기재사항 변경 및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및 기존 「산림법」 산림기술자자격증 소지자의 재발급에 한한다) 1부 다. 증명사진 1매.
관련법・제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별지 27호]
담당부서 (연락처)	목재생산과(042-481-4188)

□ 용도변경 승인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용도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지적법」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12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 연장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 1부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042-481-414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과리과(042-481-4142)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8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23)

□ 산지복구준공검사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5000원
구비서류	1.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42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43)

□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국.공유임산물무상양여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별지 13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122)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4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23)

□ 토사채취변경신고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사채취변경신고서 1부.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제3항 및 별지 제18호의 3서식
담당부서(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296)

□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지 37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43)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1부 2. 복구설계서 1부
관련법 · 제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별지40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293)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 및 별지41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43)

□ 산지복구 전문기관 지정 신청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1부 2. 재직증명 서류 1부 3.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관련법 · 제도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43호
담당부서 (연락처)	산지관리과 (042-481-4143)

산업통상자원부

□ 1종화학물질 제조 허가 ·····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 ·····
□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 ·····
□ 1종화학물질 양도 승인 ·····
□ 1종화학물질 폐기 신고 ·····
□ 1종화학물질의 수입 허가 ·····
□ 1종화학물질의 인도(인수) 신고 ·····
□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 ·····
□ 공인교정기관 인정 신청 ·····
□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
□ 공인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
□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서 ·····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 광업원부 등본교부(열람) 청구 ·····
□ 광구도 원본 등본교부(열람) 청구 ·····
□ 지적카드 열람 등본교부(열람) 청구 ·····

□ 1종화학물질 제조 허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 제조 허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4. 물질의 제조공정설명서 1부 5. 물질의 제조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1부 6. 물질의 보관방법설명서 1부 7.「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부(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구비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필증 1부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속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 제조폐지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구비서류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1부 2. 1종화학물질의 보유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 양도 승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 양도 승인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구비서류	1. 양수자가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 폐기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 폐기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구비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의 수입 허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의 수입 허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1. 수입계약서 1부 2. 수입물품용도설명서 1부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1종화학물질의 인도(인수)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1종화학물질의 인도(인수)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수출입허가증
구비서류	1. 수출입허가증사본 1부 2. 선하증권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해당없음
구비서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연락처)	철강화학과(02-2110-5647)

□ 공인교정기관 인정 신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5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인정신청분야 2. 대표자 서약서 3. 법인 등기부 등본 4. 일반현황 5. 인력현황 6. 측정설비 보유 현황 7. 표준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8. 항목별 교정방법 및 절차서 목록 9.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10.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11.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2.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13. 작성요령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4)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신청서는 별도제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교정기관 휴지(폐지)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공인교정기관 인정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인정서 (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1부 3. 작성요령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및 변경내용은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4)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신청서는 별도제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3. 작성요령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및 변경 내용은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4)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신청서는 별도제출)
관련법・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7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5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2. 대표자 서약서 3.일반현황 4. 인력현황 5. 검사설비 보유현황 6 항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8.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9.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10. 작성요령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4)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신청서는 별도제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명	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5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2. 대표자 서약서 3. 일반현황 4. 인력현황 5. 시험설비 보유현황 6.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7.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8.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10.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11.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12. 신청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불확도 추정실적(시험품목별) 13. 작성요령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 (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4)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신청서는 별도제출).
관련법 · 제도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8조
담당부서 (연락처)	적합성평가과(02-509-7298 ~ 7301)

□ 광업원부 등본교부(열람) 청구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
민원사무 명	광업원부 등본교부(열람) 청구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광업원부 등본 : 150원/장당
본인확인	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민원우편 신청서 1부 또는 등본교부(열람) 청구서 1부
관련법 · 제도	1. 광업등록령 제7조 2.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연락처)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02-2110-4922)

□ 광구도 원본 등본교부(열람) 청구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
민원사무 명	광구도 원본 등본교부(열람) 청구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광구도 원본 : 1,000원 /장당
본인확인	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민원우편 신청서 1부 또는 등본교부(열람) 청구서 1부
관련법 · 제도	1. 광업등록령 제7조 2.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연락처)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02-2110-4922)

□ 지적카드 열람 등본교부(열람) 청구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
민원사무 명	지적카드 열람 등본교부(열람) 청구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지적카드 열람 : 250원/광구
본인확인	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민원우편 신청서 1부 또는 등본교부(열람) 청구서 1부
관련법 · 제도	1. 광업등록령 제7조 2.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연락처)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02-2110-4922)

외 교 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소관부처	외교부
민원사무 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600원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우편민원신청은 본인만 가능) 2. 본인이 아닌 경우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창구 (02-2100-7578)에 대리인이 출두(위임장 소지 필요)
관련법 · 제도	1.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2.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3.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제4조(서식 4)
담당부서 (연락처)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02-2100-7578)

중 앙 소 방 본 부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
□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신청 ·····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
□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통보) ·····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
□ 방염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방염처리업 지위 승계 신고 ·····
□ 방염처리업합병신고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
□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 ·····
□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 ·····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
□ 민방위대편입지원(신고) ·····
□ 민방위대편입제외 신청서 ·····
□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전문 4만원 / 일반(분야별) 2만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합니다) 1부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table>
<tr><td>소관부처</td><td colspan="3">중앙소방본부</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3">민원우편, 인터넷, 방문</td></tr>
<tr><td>수수료</td><td colspan="3">전문 2만원 / 일반(분야별) 1만원</td></tr>
<tr><td rowspan="4">구비서류</td><td>변 경 구 분</td><td>민원인 제출서류</td><td>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td></tr>
<tr><td>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td><td rowspan="2">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2.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td><td rowspan="2">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에
한합니다) 1부</td></tr>
<tr><td>대 표 자</td></tr>
<tr><td>기술 능력자</td><td colspan="2">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소방시설업등록수첩
3. 변경된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td></tr>
<tr><td>관련법·제도</td><td colspan="3">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6조제1항</td></tr>
<tr><td>담당부서
(연락처)</td><td colspan="3">소방산업과(02-2100-5387)</td></tr>
</table>

□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1.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2.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못 쓰게 된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 전의 것을 말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6.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 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 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6. 장비명세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1부 2.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3.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4.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하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시설 부분완공 검사 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1부 2.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3.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소방시설공사업법」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5.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신고서 1부 2.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3.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5.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2항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통보서 1부 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부표 2의 구분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3.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 통보서 1부 2.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통보)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1부 3. 착공신고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을 말합니다)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소방공사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산업과(02-2100-5387)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관련법·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3.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에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완공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관련법 · 제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방염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방염처리업등록수첩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방염처리업등록수첩 3. 자격수첩 또는 변경된 기술인력의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관련법·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방염처리업 지위 승계 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방염처리업합병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2호 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4만원
구비서류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1만원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만원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소방제도과(02-2100-5333)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유예대상> 1. 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시 : 통장·이장 확인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관계 기관장 확인서 <면제대상> 1.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중인 자 : 교도소자의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출입국관리 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3. 민방위 관련 특수기능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한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 2.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4항, 제31조 3.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7조
담당부서 (연락처)	민방위과(02-2100-5238)

□ 민방위대편입지원(신고)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친권자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관련법・제도	1.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민방위과(02-2100-5232)

□ 민방위대편입제외 신청서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민원사무 명	민방위대편입제외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심사제외자 - 식별 가능 심신장애(통·리장 확인서) -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진단의사의 진단서) 2. 지원복무 해제(구비서류 없음) - 복무 1년경과, 생업지장, 기타
관련법·제도	1.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담당부서 (연락처)	민방위과(02-2100-5232)

□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소관부처	중앙소방본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 · 제도	1.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2.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
담당부서 (연락처)	민방위과(02-2100-5232)

해 양 경 비 안 전 본 부

□ 선박구난작업 개시 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청(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휴업, 운항휴지, 폐업, 재게 신고 ·····
□ 해수면 유·도선 안전검사 신청 ·····
□ 해수면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신고(변경신고) ·····
□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 신고(변경) ·····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
□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 ·····
□ 자재·약제 검정신청 ·····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신청 ·····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시험 신청 ·····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
□ 폐기물위탁처리신고·변경신고 ·····
□ 선박해체 해양오염 방지작업 계획 신고 ·····
□ 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
□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
□ 자재·약제 성능시험 신청 ·····
□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해수면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법인합병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
□ 폐기물배출해역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 선박구난작업 개시 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선박구난작업 개시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수난구호법 제19조제1항 2.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연락처)	수색구조과(032-835-2446)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7.12.18>

구난작업 신고서

사고일시·장소	
작 업 유 형	인양 이초 예인 기타( )
구 난 대 상	선명 톤수 업종
기 간	~ (일)
작 업 장 소	위도 N, 경도 E
작업인력·장비동원	인력:
	장비:
작 업 계 획	
해양오염 방지대책	
항로장애 여부정도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비고 : 작업 중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청(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청(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8.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합니다) 1부 ※ 7번, 8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사항 변경신청(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면허증(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신고확인증(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7.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1부 8.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만 해당) 1부 ※ 7번, 8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상기 첨부서류 중 변경된 서류
관련법・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5조제2항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휴업, 운항휴지, 폐업, 재개 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휴업, 운항휴지, 폐업, 재개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류(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7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도선 안전검사 신청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 안전검사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무동력선 : 1,000원, 동력선 : 1,500원 ※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 2. 인명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관련법·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신고(변경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신고(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운항약관 1부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2조제1항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수면 유선요금·도선운임 신고(변경)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선요금 · 도선운임 신고(변경)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운임 산출계산서(도선의 경우만 제출) 1부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변경)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3,000원(수입인지로 제출)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방제기획과(032-835-2392)

□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 · 성능시험 · 검정인정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3,000원(수입인지로 제출)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 · 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 ·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 · 약제 -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 · 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약제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방제기획과(032-835-2392)

□ 자재·약제 검정신청

<table>
<tr><td>소관부처</td><td>해양경비안전본부</td></tr>
<tr><td>민원사무 명</td><td>자재 · 약제 검정신청</td></tr>
<tr><td>신청방법</td><td>민원우편, 인터넷, 방문</td></tr>
<tr><td>수수료</td><td>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제1항에 따름
<table>
<tr><th rowspan="2">자재 · 약제의 종류</th><th colspan="2">검정</th></tr>
<tr><th>수수료</th><th>단위</th></tr>
<tr><td>오일펜스</td><td>2,000</td><td>원/20m</td></tr>
<tr><td>유처리제</td><td>2,000</td><td>원/18ℓ</td></tr>
<tr><td>유흡착재</td><td>2,000</td><td>원/10㎏</td></tr>
<tr><td>유겔화제</td><td>2,000</td><td>원/10㎏</td></tr>
<tr><td>생물정화제제</td><td>2,000</td><td>원/18ℓ</td></tr>
</table></td></tr>
<tr><td>본인확인</td><td>없음</td></tr>
<tr><td>구비서류</td><td>없음</td></tr>
<tr><td>관련법 · 제도</td><td>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td></tr>
<tr><td>담당부서
(연락처)</td><td>방제기획과((032-835-2392,031-785-1282)
※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제3항에 의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행</td></tr>
</table>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신청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3,000원(수입인지로 제출)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사양서 1부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법・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방제기획과(032-835-2392)

□ 형식승인대상 외 자재·약제 성능시험 신청

<table>
<tr><td>소관부처</td><td>해양경비안전본부</td></tr>
<tr><td>민원사무 명</td><td>형식승인대상외 자재 · 약제 성능시험 신청</td></tr>
<tr><td>신청방법</td><td>민원우편, 인터넷, 방문</td></tr>
<tr><td>수수료</td><td>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제1항에 따름
<table>
<tr><th rowspan="2">자재 · 약제의 종류</th><th colspan="2">성능시험</th></tr>
<tr><th>수수료</th><th>단위</th></tr>
<tr><td>오일펜스</td><td>232,000</td><td>원/1회</td></tr>
<tr><td>유처리제</td><td>1,990,000</td><td>원/1회</td></tr>
<tr><td>유흡착재</td><td>413,000</td><td>원/1회</td></tr>
<tr><td>유겔화제</td><td>1,687,000</td><td>원/1회</td></tr>
<tr><td>생물정화제제</td><td>2,867,000</td><td>원/1회</td></tr>
</table></td></tr>
<tr><td>본인확인</td><td>없음</td></tr>
<tr><td>구비서류</td><td>1. 자재 · 약제의 사양서 1부
2.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1부</td></tr>
<tr><td>관련법 · 제도</td><td>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td></tr>
<tr><td>담당부서
(연락처)</td><td>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813)
※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제3항에 의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행</td></tr>
</table>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신청)
민원사무 명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3,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1부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 2.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
담당부서 (연락처)	기동방제과(032-835-2296)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청)
수수료	3,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담당부서 (연락처)	기동방제과(032-835-2296)

□ 폐기물위탁처리신고·변경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폐기물위탁처리신고・변경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신규 위탁처리 신고 시 가.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균 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 (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함)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관한 검사성적서 1부 라. ⑬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 1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1부 2. 위탁처리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 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제5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 선박해체 해양오염 방지작업 계획 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선박해체 해양오염 방지작업 계획 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1부 2. 해체장소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1부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8)

□ 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관련법 · 제도	1.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0, 11조
담당부서 (연락처)	수상레저과(032-835-2452)

□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20,000원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1. 제출서류 가. 정관(법인인 경우) 나. 사업장 명세서 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라.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서 마. 영업구역도 바. 하천 또는 그 밖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서
관련법 · 제도	1.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수상레저과(032-835-2552)

□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6.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배출해역지정서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선박검사증서 1부
관련법·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 자재·약제 성능시험 신청

<table>
<tr><td>소관부처</td><td>해양경비안전본부</td></tr>
<tr><td>민원사무 명</td><td>자재 · 약제 성능시험 신청</td></tr>
<tr><td>신청방법</td><td>민원우편, 인터넷, 방문</td></tr>
<tr><td>수수료</td><td>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제1항에 따름
<table>
<tr><th rowspan="2">자재 · 약제의 종류</th><th colspan="2">성능시험</th></tr>
<tr><th>수수료</th><th>단위</th></tr>
<tr><td>오일펜스</td><td>232,000</td><td>원/1회</td></tr>
<tr><td>유처리제</td><td>1,990,000</td><td>원/1회</td></tr>
<tr><td>유흡착재</td><td>413,000</td><td>원/1회</td></tr>
<tr><td>유겔화제</td><td>1,687,000</td><td>원/1회</td></tr>
<tr><td>생물정화제제</td><td>2,867,000</td><td>원/1회</td></tr>
</table></td></tr>
<tr><td>본인확인</td><td>없음</td></tr>
<tr><td>구비서류</td><td>1. 자재 · 약제의 사양서 1부
2.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1부</td></tr>
<tr><td>관련법 · 제도</td><td>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5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td></tr>
<tr><td>담당부서
(연락처)</td><td>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813)
※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제3항에 의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행</td></tr>
</table>

□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행자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록표 초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방제기획과(032-835-2392)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2. 검사업무 수행계획서 3. 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 4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 해수면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3번, 4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제1항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3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법인합병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법인합병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웨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 3.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4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2제1항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의2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3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상속신고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관련법・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3제1항 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조의2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349)

□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수면 유·도선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1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1부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 출생증명서 등) 1부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관련법 · 제도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담당부서 (연락처)	해상안전과(032-835-2249)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지정서 1부.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 5번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관련법·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298,2398)

□ 폐기물배출해역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폐기물배출해역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신청방법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신규 지정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지정 신청 시 가.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나.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1부(지정해역, 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15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소관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민원사무 명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폐기물해양배출업, 유창청소업에 한함)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예방지도과(032-835-2399)

해 양 수 산 부

□ 수산물 가공업 신고 ·····
□ 수산물 가공업 변경 신고 ·····
□ 수산물 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
□ 원양어업 허가 신청 ·····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신청 ·····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 어업허가 신청서 ·····
□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
□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
□ 어업휴업 신고 ·····
□ 어업폐지 신고(근해) ·····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신청 ·····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신고 ·····
□ 어업 변경허가 신청 ·····
□ 어업허가 유예신청 ·····
□ 어업휴업 연장신고 ·····
□ 어업개시 신고 ·····
□ 시험어업 신청 ·····

□ 수산물가공업 신고

<table>
<tr><td>소관부처</td><td>해양수산부</td></tr>
<tr><td>신청방법</td><td>해양수산부 또는 부산광역시에 우편·방문 신청</td></tr>
<tr><td>수수료</td><td>없음</td></tr>
<tr><td>본인확인</td><td>없음</td></tr>
<tr><td>구비서류</td><td>
<table>
<tr><th>구분</th><th>첨부서류</th><th>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h></tr>
<tr><td>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td><td>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td><td>없음</td></tr>
<tr><td>선상수산물가공업</td><td>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td><td>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td></tr>
<tr><td>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td><td>1.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td><td>없음</td></tr>
</table>
</td></tr>
<tr><td>관련법 · 제도</td><td>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td></tr>
<tr><td>담당부서
(연락처)</td><td>유통가공과(044-200-5446)</td></tr>
</table>

□ 수산물가공업 변경 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해양수산부 및 해당 지자체에 우편·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유통가공과(044-200-5446)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우편·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관련법 · 제도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연락처)	유통가공과(044-200-5446)

□ 원양어업 허가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4,000원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원양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선박등기부 등본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하거나 용선한 경우에만 제출) 1부 -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관련법 · 제도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2.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원양산업과(044-200-5366~7)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민원우편, 전자민원(G4C) 인터넷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2. 구비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합작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 보고서 사본 1부
관련법 · 제도	1. 관세법 제93조제6호, 제7호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제6항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담당부서 (연락처)	원양산업과(044-200-5363~4)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우편·방문 신청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함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별도서식 없음)
관련법・제도	어업등록령 제17조제1항, 제2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

□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허가 신청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한다.) 3. 선박검사증서 4. 어선 임차 시 임차 확인 서류(20톤 이상인 경우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5.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어선대체의 경우 피대체선 조치계획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훼손 시)
관련법 · 제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유에 따름)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8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휴업 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 휴업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30조제1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폐업 신고(근해)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폐지 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19)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어업관리단 또는 시·도지사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이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경도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어업허가증
관련법·제도	1.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이중 이상 자망의 사용 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어업관리단,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이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관련법·제도	1.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 변경허가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사유에 따름)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8조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허가 유예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침몰, 행방불명,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어업폐지 신고서 1부
관련법 · 제도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휴업 연장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휴업 연장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관련법 · 제도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2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어업개시 신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어업개시 신고서 1부
관련법・제도	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3항 2.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21조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 시험어업 신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민원우편, 방문
수수료	3,000원(수입증지)
본인확인	없음
구비서류	1. 시험어업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확인 서류 (20톤 이상일 경우 선박등기부 등본)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6.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7.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8.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포함) 9.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할 경우) 10. 선박검사증서(어선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제도	1.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어업정책과 (044-200-5521)

행 정 자 치 부

□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

□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민원사무 명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세분석과(02-2100-5997)

□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민원사무 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지참 3.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해외이주 여권발급신청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관련법 · 제도	1. 지방세기본법 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세분석과(02-2100-5997)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민원사무 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관련법 · 제도	1. 지방세기본법 제80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세분석과(02-2100-5997)

환 경 부

□ 손실보상청구 ·····

□ 재결신청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 (대기·폐수)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

□ (대기·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청 ·····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

□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 ·····

□ 손실보상청구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손실보상청구(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손실보상청구서 1부 2.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 3.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 재결신청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재결신청(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재결신청서 1부 2.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명세서 각 1부 3. 그동안의 협의내용 및 진행상황 1부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4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2-2110-6773)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3.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3.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 (대기·폐수)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대기 ·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대기 ·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대기관리과(044-201-6912) 수질관리과(044-201-7067)

□ (대기·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대기 · 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1부 2. 납부통지서 1부 3.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담당부서 (연락처)	대기관리과(044-201-6912) 수질관리과(044-201-7067)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청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폐쇄신고서 1부 2.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관련법 · 제도	1.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 (연락처)	생활하수과(044-201-7152)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 계획서 1부 2.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3.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서 1부 2. 승계를 증명할 수 서류 1부 3.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5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

소관부처	환경부
민원사무 명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 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 누출검사)면제승인 신청서 1부 2.「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 · 제도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담당부서 (연락처)	토양지하수과(044-201-7178)

2016년 민원우편 처리 기준표

인쇄발행 : 2015년 12월

발 행 인 : 우정사업본부장

발 행 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내우편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 044-200-8252)